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86호 2023. 3. 6. (월)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3-578호 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 람												
-----	--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실 (☎ 749-5705, FAX 749-4625)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3-578호

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3년 3월 6일

순 천 시 장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기준인력)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증원

○ (의원정수) 2022년 1/4 → 2023년 1/2 확대 ※ 2022년 6명 → 2023년 12명

2. 주요내용

① 직종별 정원 조정

○ (총 정원) 1,623명 → 1,629명 / * 6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623	1,629	6	6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583	1,589	6	6	-	6급 이하 6
별정직	3	3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② 정원관리기관별 · 직종별 개정 내역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현행						개정					
	총계	본청	의회	직수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본청	의회	직수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①+②+③+④+⑤)	1,623	1,623					1,629 (+6)	1,629 (+6)				
정무직 계(①)	1	1					1	1				
시장	1	1					1	1				
일반직 계(②)	1,583	1,583					1,589 (+6)	1,589 (+6)				
3급	1	1					1	1				
4급	11	5	1	2	3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82	37	3	8	10	24
6급이하 계	1,489	1,489					1,495 (+6)	1,495 (+6)				

별정직 계(㉓)	3	3					3	3				
5급상당	1	1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2	1	1			
연구직 계(㉔)	7	7					7	7				
연구관	1				1		1				1	
연구사	6	6					6	6				
지도직 계(㉕)	29	29					29	29				
지도관	2			2			2			2		
지도사	27	27					27	27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행정내부적인 사항 규정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28.(가족복지과-66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28(기획예산실-28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3명” 을 “1,62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5명” 을 “41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9	1,6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9	1,589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1,495	1,49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623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9명</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35명</u>		2. ----- <u>41명</u>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623</u>	<u>1,623</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583</u>	<u>1,583</u>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u>1,489</u>	<u>1,489</u>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629</u>	<u>1,629</u>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589</u>	<u>1,589</u>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u>1,495</u>	<u>1,495</u>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6	-	-	6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6명	345,161,460	
일반 직	6급	83,101,280	평균 57,526,910	345,161,46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일반직					비고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참고**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안이유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서산시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대상 : 충청남도 서산시

나. 추진내용

-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공동 발전을 도모
-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발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추진
-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추진으로 상호 파트너십 강화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상호협력

다. 충청남도 서산시 현황

- 면 적 : 742.1km²
- 인 구 : 180,811명
- 재 정 : 1조 1,378억원
- 행정구역 : 1읍 9면 5동
- 주요명소 : 해미읍성, 간월암, 개심사, 가야산, 한우목장
- 특 징 :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천수만 등 생태·관광 도시면서 서산 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도시

라. 주요교류 추진 현황

- 서산시 자매결연 先제의 : 2023. 1. 19.(목)
- 자매결연 의향 전달(순천시 → 서산시) : 2023. 1. 31.(화)
- 순천시-서산시 실무 협의 : 2023. 2. 14.(화)

- (자매결연) 2023. 3월 중순 이내 추진
→ 자매결연 체결 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희망
- (협약식) 서산시에서 협약식 추진

마. 관련법령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무부서 의견

- 서산시와 도시 비전,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의 지역 여건이 비슷하며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천수만 버드랜드, 가야산 휴양복지숲 등 생태·관광도시로서 공통점이 존재하며,
- 양 도시 간 우수 선진 행정사례 및 노하우 공유와 관광지 상호 할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 등을 통해 시민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서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함.

4.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 붙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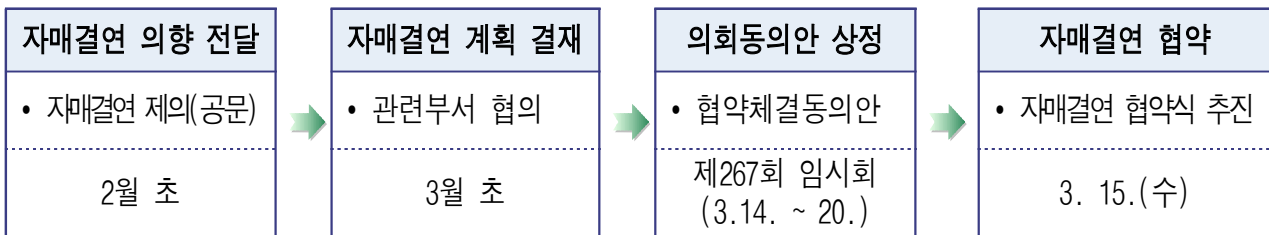
충청남도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방향

- (대 등) 양 도시 간 상호 이익과 호혜 평등원칙에 입각한 교류 추진
- (전 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 교류 추진
- (지 속)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추진으로 상호 파트너십 강화
- (박람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상호협력

II 추진근거 및 절차

- (추진근거)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추진절차)



III 추진경과 및 계획

- 서산시 자매결연 先제의 : 2023. 1. 19.(목)
- 자매결연 의향 전달(순천시 → 서산시) : 2023. 1. 31.(화)
- 순천시-서산시 실무 협의 : 2023. 2. 14.(화)

- (자매결연) 2023. 3월 중순 이내 추진
→ 자매결연 체결 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희망
- (협약식) 서산시에서 협약식 추진

-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순천시의회 상정 : 임시회 회기 中
-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 2023. 3. 15.(수)
 - 회기 내(3. 14. ~ 20.) 협약 체결 의회와 사전협의 完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초청 : 2023. 3. 31.(금)

IV 자매결연 적정성 검토

1 도시 현황

구 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해뜨는 서산
인 구	281,249명	180,811명
면 적	910.2km ²	742.1km ²
재 정	1조 3,930억원	1조 1,378억원
행정구역	1읍 10면 13동	1읍 9면 5동
특산물	매실, 감, 한우, 고들빼기, 복숭아, 배, 오이, 참다래	뽕부기쌀, 서산6쪽마늘, 인삼, 생강, 감자, 어리굴젓, 알타리무
문화재	167개(국가지정 74, 도지정 45, 문화재자료 17, 등록문화 15, 향토문화 16)	79개(국가지정 28, 도지정 28, 문화재자료 21, 등록문화 21)
주요명소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해미읍성, 간월암, 개심사, 가야산, 한우목장
주요행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0월) 2023세계유산축전(8월)	삼길포우력축제(7월), 서산해미읍성축제(10월)
자매결연	진주시, 오산시,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없음

2 자매결연 검토 : 적정

- (유사성) 도시 비전,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의 지역 여건 비슷
- (공통성)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점

-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천수만 버드랜드, 가야산 휴양복지숲 등 생태·관광도시 공통점
- 해미읍성, 마애여래삼존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동일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미래 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신청사 건립 등 핵심 사업(산업) 공통점

- (보완성) 양 도시 간 우수 선진 행정사례 및 노하우 공유 가능

- (순천시) 생태수도 일류 도시로서 정원 조성 노하우 공유
- (서산시) 서산테크노벨리 등 첨단산업 육성 노하우 공유

- (기대성) 시민 편익 제공, 지역 경제활성화, 박람회 참여 및 홍보 효과

- (시민편익) 관광지 상호 할인을 통해 관광지 이용 편익 제공
- (경제효과) 각종 워크숍, 문화예술 행사 상호 유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박람회) 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자매도시 시민 참여 확대로 박람회 홍보 효과 상승

3 교류대상 사업(안)

- 양 도시 간 주요 축제, 문화행사 상호방문 및 문화예술단체 교류 추진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초청, 「대한민국 시민의날」 참석 요청

-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 추진

○ 청소년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

- 홈스테이, 스포츠 및 산업단지 견학, 문화체험 등 교류사업 발굴

V

자매결연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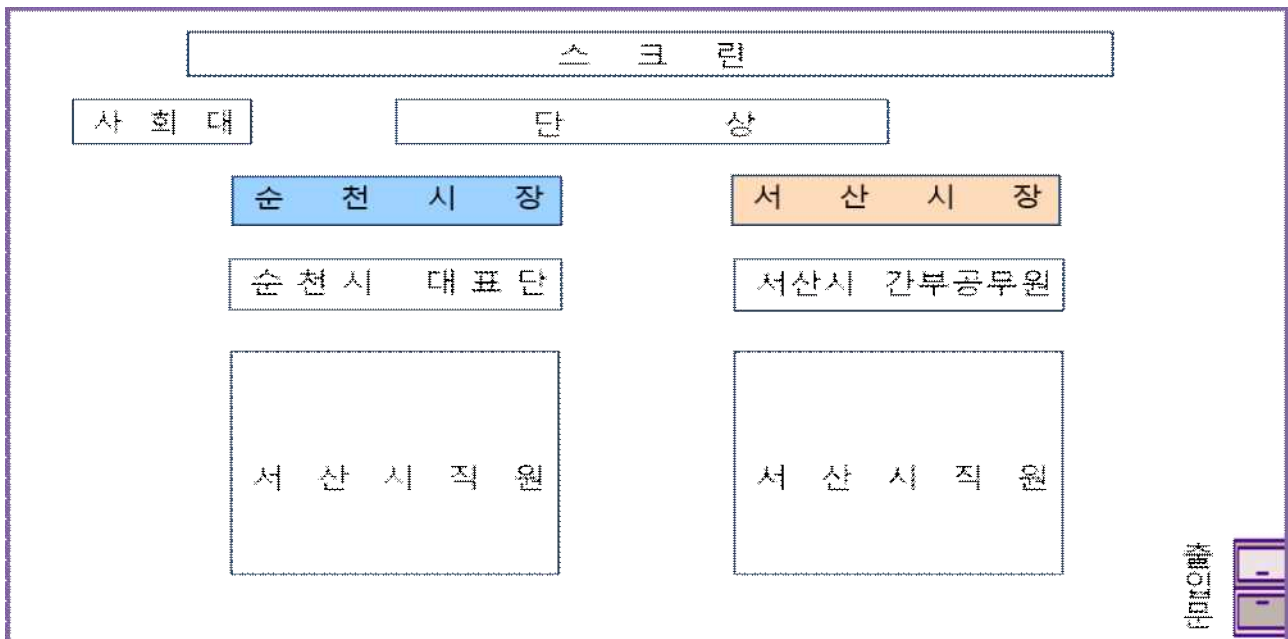
- (일 시) 2023. 3. 15.(수) 12:00
- (장 소) 서산시청 대회의실
- (참 석) 10명(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 등)
- (내 용)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 등
 - 인사말씀, 강연,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오찬 등
- (세부일정) / 서산시 요청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2:00	12:10	60'	▪ 영접(서산시)	오찬장 앞
12:10	13:00	50'	▪ 오찬	오찬장(미정)
13:00	13:10	10'	▪ 이동(오찬장 → 서산시청)	
13:10	13:30	20'	▪ 차담	시장실
13:30	14:00	30'	▪ 홍보동영상 시청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환영사, 답사)	대회의실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순천시장, 서산시장
14:00	15:30	90'	▪ 강연(“3선 시장이 바라본 시장과 공직자의 역할”)	순천시장
15:30	15:50	20'	▪ 협약서 서명 ▪ 기념촬영	
15:50			▪ 폐회	

○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순 천 시	순 천 시 장	노 관 규	
2		행 정 안 전 국 장	서 규 원	
3		총 무 과 장	유 형 익	
1	서 산 시	서 산 시 장	이 완 섭	
2		자 치 행 정 국 장	박 노 수	
3		자 치 행 정 과 장	김 일 환	

○ (좌석배치도)



서산시장 프로필



- (성 명) 이완섭(1957. 1. 15. / 만 66세)
- (고 향) 충남 서산
- (학 력) 송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 공학 박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주요경력)
 - 제8대, 9대, 11대 서산시장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 서산시 부시장
 -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장
 - 행정7급 공채(총무처)

○ (기념품)

① 서산시장

짱뚱어 오카리나 : 순천만의 갯벌에 서식하는 짱뚱어를 형상화 한 오카리나



② 직원

순천엔매실

2023정원박람회 홍보물



- 붙임 1. 협약서(안) 1부.
- 2. 서산시 일반현황 1부. 끝.

붙임 1

협약서(안)

**전라남도 순천시 ↔ 충청남도 서산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서**

전라남도 순천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본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업무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양 지역 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관광, 행정, 교육, 복지,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3. 양 자치단체는 민간단체,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4. 양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 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결정한다.
5.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과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협약을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월 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 천 시 장



충청남도 서산시
서 산 시 장

붙임 2

서산시 일반현황

구분	기본현황
홈페이지	○ www.seosan.go.kr/
주 소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우31974)
대표전화	○ 1422-45
시 장	○ 이완섭(국민의힘) ○ 부시장: 구상
의 회	○ 김맹호(국민의힘) ○ 부의장: 이수익(무소속)
상 징	○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 소나무, 국화
시정비전	○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시정목표	○ 풍요로운 경제도시, 걱정없는 복지도시, 품격있는 희망도시, ○ 오감만족 관광도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일반현황	○ 면 적: 742.1km ² ○ 인 구: 180,811명('22. 12.) ○ 세 대: 82,433세대('22. 12.) ○ 행정구역: 1읍 9면 5동 ○ 행정기구: 4담당관 4국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5읍면동 ○ 공 무 원: 1,250명('23. 1.) ○ 지방의회 의원 수: 14명(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7) ○ 시민의 날: 매년 10. 1.
학 교	○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8개소, 대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예 산	○ 12,276억원(일반회계 10,444억원, 특별회계·기금 1,832억원)
특 산 물	○ 뽕부기쌀, 서산6쪽마늘, 인삼, 생강, 감자, 어리굴젓, 고북 알타리무, 생강한과, 달래 등
문 화 재	○ 79개(국가지정 28, 도지정 28, 문화재 자료 21, 등록문화재 21) - 용현리 마래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등
관 광	○ 해미읍성, 마애여래삼존상, 간월암, 개심사,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 한우목장, 삼길포항
축 제	○ 삼길포우력축제(7월), 서산해미읍성축제(10월), 서산국화축제(10월)
자매결연	○ 일본 나라현 덴리시(1991. 11. 7.), 일본 아오모리현 닛코마치(2012. 6. 22.) ○ 중국 산둥성 룡청시(2012. 11. 20.),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2008. 6. 3.)
휘 장	 ○ 떠오르는 태양, 청정 바다와 산 등 육해공을 형상화하여 서산의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를 담은 브랜드마크 ○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전진하는 파도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뱃길을 열고 서해안의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서산을 표현
자매결연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041-660-2210) ○ 시정팀장 김윤환(041-660-3231) ○ 담당자 방순태(041-660-2362)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솔로)시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도시 :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시(Surakarta)

나. 추진 내용

-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공동 발전을 도모
-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발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추진
- 상시 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사항 및 방식 구체화

다. 수라카르타(솔로)시 현황

주요현황

- 면 적 : 44.1km²
- 위 치 : 중부자바주
- 행정구역 : 5 꼬차마판(읍·면) 54개 마을
- 인 구 : 578,492명('21년 기준)
- 산업구조 : 상업(전통의상·골동품 등), 관광업 발달

□ 도시특징

- 자바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관광도시로, 고고학적으로 약 100만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중부 자바 권력의 중심지로 수라카르타 왕궁, 망쿠나가란 궁궁 등 건축물이 유명하며 문화적 허브로의 명성 보유.
- 높은 인구밀도로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5~6위. : 인접 지역을 포함한 ‘수라카르타 수도권 지역’에 약 360만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조코 위도도)의 고향

3. 주요교류 추진 현황

- 솔로시 순천시와의 교류 의향 전달 : 2023. 2.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초청장 발송 : 2023. 3.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 등)

5.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 붙임

[붙임]

순천시 -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 자매결연 추진 계획(안)

I 추진 근거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8조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순천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II 추진 방향

- (정책) 정부 추진 ‘인도-태평양 전략’ 외교정책 핵심국가와의 교류

- 인도네시아 : 안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 위한 핵심 협력국가
- 특징 : 수교 50주년 / 아세안 의장국

- (분야) 현지 특성 및 국제 정세 반영한 교류 분야 다양화

- (문화) 한류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 우리 문화 현지 보급
- (역사) 역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순천: 문화재 多 / 솔로: 자바문화)
- (행정) 수도 이전 및 도시 발전 등 행정 교류 수요 多

- (현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해외 관람객 유치 활성화

- 세계 4위 인구 국가 인도네시아 → 관광 시장 통한 순천 방문 유도

Ⅲ 자매결연 적정성 검토

① 지역현황 비교

구 분	순천시	수라카르타시
인 구	281,074명('23. 2월 말 기준)	578,492명('21년 기준)
위 치	전라남도 동부	중부 자바주
면 적	910.95km ²	44.1km ²
행정구역	1읍 10면 13동	5 꼬차마탄(읍면) / 54개 마을
경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산업 : 관광, 농업, 서비스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산업 : 상업 발달 (분야별 특화 시장: 전통의상, 골동품 등)
주요명소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수라카르타 왕궁, 망쿠나가란 궁궁, 라다 푸스타카 박물관 등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국가정원, 순천만 위치 • 문화재법에 의한 모든 종별의 문화재 보유(선암사 등) • 전남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바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관광도시 •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조코 위도도) 고향 • 인구밀도 높음 - 인접지역 포함하여 약 360만 명 거주 (수라카르타 수도권 지역)
국제 자매결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콜롬비아시 • 일본 이즈미시 • 중국 닝보시 • 중국 타이위안시 • 중국 잉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산시성 시안시

2] 자매결연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 외교정책인 ‘인-태 전략’의 핵심국가와의 교류 통한 우리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확립 • 낙안읍성, 송광사 등 전통 역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교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시와 솔로시 간 항공 직항노선 부재(편도 약 16시간 소요 예정) •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지역의 확대 - 동아시아 편중(중일) → 동남아 국가 신규 • 2023국제정원박람회 해외 관람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시 위치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교류의 어려움 존재
기회(O)	위협(T)

- 국제교류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지식 등을 교환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양 도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순천시의 문화·행정적 우수성과 솔로시의 잠재 성장력 등을 결집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IV 교류사업(안)

- (관광) 양 시 대표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 바틱 카니발 등 인적 교류
 - 행정·공연단 등의 문화 사절단 파견
 - 상호 문화 교류 및 해외 관람객 유치(행정·기관·단체 등)
- (역사) 양 시 공통점인 유구한 역사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 교류
 - 문화재 등 공동 학술 연구 진행 및 상호 관광객 유치 협조
 - 성(城) 문화 중심 : 순천(낙안읍성) / 솔로(수라카르타 왕궁)

○ (환경) 폐기물 및 대기·수질 오염 분야 공무원 연수 및 기술 교류

-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지원 위한 연구 공동 협력
(도시계획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정책 연수 추진)
- 정부 차원의 친환경 사업 추진 시, 양 시 핵심적 역할 수행

○ (농업) 순천의 첨단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토지·인력의 융합 통한

- 아시아 미래농업인력 양성 및 협업 통한 선제적 식량위기 대응

V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안)

○ 솔로시 순천시와의 교류 의향 전달 : 2023. 2월 초

○ 순천시의회 자매결연 동의안 제출 및 심의 요청 : 2023. 3월 중

○ 순천시-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23. 3. 30.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솔로시 방문 연계

- 붙임 1. 자매도시 체결 협의서(안) 1부.
2. 국제 교류 현황 1부.
3. 수라카르타시 현황. 끝.

붙임 1 자매도시 체결 합의서(안)

대한민국 순천시 -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 간 자매도시 체결 협의서

대한민국 순천시와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는 양국 국교 수교 원칙에 따라 양 도시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상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에 동의한다.

양 도시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양 도시는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발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양 도시는 대표단 상호 간 방문과 정기적인 연락 등 방식을 통해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내용과 협력 방식을 공동으로 구체화하고 실현시킨다.

본 협의서는 2023년 3월 30일에 체결, 동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각 2부를 작성하여 어느 일방이 효력 정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

붙임 2 국제 교류 현황

연번	구분	자매결연 지역 현황				교 류 실 적
		국가 및 지역명	체결일자	인구(명)	면적(km ²)	
합계		9개국 15개 도시 : 자매결연 5, 우호교류 3, MOU 8				
1	자매결연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시	1991.10.18.	110,438	156	·상호친선 방문 12회 ·학생교류 1회 ·도서교환 4회(147권)
2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2012.11.13.	55,194	330.06	·상호 친선방문 16회 ·청소년교류 8회 (146명) ·문화행사 참가 방문 19회 ·기업통상교류 1회
3		중국 저장성 Ning보시	2017.11.10.	9,000,000	9,817	·상호 친선 방문 21회 ·청소년교류 9회(104명) ·문화행사 참가 방문 16회 ·공무원 상호파견 4명
4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	2019. 6. 25.	4,340,000	6,988	·상호 친선방문 3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1회
5		중국 잉탄시	2021. 4. 30.	1,300,000	3,560	·상호 친선방문 1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2회
1	우호교류	중국 라오닝성 단둥시	2003.02.22.	2,430,000	15,200	·상호 친선 방문 11회 ·문화행사참가방문 3회
2		프랑스 낭트시	2009.10.30.	283,025	65.19	·상호 친선 방문 12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13회 ·도서교환 2회(30권)
3		터키 안탈리아주 안탈리아시	2016.04.21.	2,288,456	21,109	·엑스포 정원조성 ·문화행사 참가방문 1회
1	우호교류 MOU	세이셸공화국	2012.10.29.	90,000	455	·상호 친선 방문 4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10회
2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	2012.10.29.	26,000	4.38	·상호 친선 방문 1회 ·서신교환 5회
3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2013.04.19.	207,200	77	·상호 친선 방문 2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3회
4		브라질 쿠리치바시	2014.08.04.	1,850,000	430.9	·상호 친선 방문 1회
5		미국 윌링시	2016.08.12.	37,648	22.60	·상호 친선 방문 2회
6		러시아 아르츨시	2017. 6. 20.	150,000	506.4	·친선 방문 1회 ·행사 참가 방문 1회
7		탄자니아 모시시	2018. 1. 31.	200,000	58	·서신교환 2회 ·상호 친선방문 2회
8		중국 첸둥난주	2019. 3. 14.	4,660,000	30,000	·상호 친선방문 1회 ·문화행사 참가 방문 2회

붙임 3 수라카르타시 도시 정보

□ 시 주요 사업

- 비전 : 현대적이고 견고하며 민첩하고 창의적이며 번영하는 문화도시
- 미션
 - ① 지역 사회 건강의 질적 향상 도모
 - ② 적응력 높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강화
 - ③ 문화관광 진흥을 지원하는 도시공간계획 및 인프라 구현
 - ④ 교육, 경제,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청소년과 시민의 우수성 및 경쟁력 향상
 - ⑤ 상생과 다양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첩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 발전
 - ⑥ 정의롭고 포용적인 시민과 함께 번영과 복지 실현
 - ⑦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생활체계 속에서 지역 상생 및 종교간 화합 조성

□ 시장 프로필

- 성 명 :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 출 생 : 1987. 10. 1. <35세>
- 가 족 : 아버지 조코 위도도 現 대통령
- 학 력 : 초등학교-중학교(인도네시아)
Orchid Par Secondary School 졸업(싱가포르)
- 경 력 : 가구 회사, 케이터링, 마트 체인점 등 회사 경영
수라카르타시장(2021년~) *차기 대통령 출마 의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202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자연마을 반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상사면 관할구역 : 1개 반 신설
 - 연동리 내 제2반(오실) : 전원주택 단지 조성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2개리, 9개반 신설
 - 포레나순천 아파트 : 건보2리 ~ 3리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6개통 24개반 신설
 -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 45통 ~ 48통(4개통 14개반)
 -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 49통 ~ 50통(2개통 10개반)
- [별표 2] 조곡동 관할구역 : 2개통 10개반 신설
 -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 18통 ~ 19통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51,40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3. ~ 2.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3.(가족복지과-379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 31.(자치행정과-132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4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3.(순천시 공고 제2023-28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사면 연동리에 1개 반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서면 건보리에 2개리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3개리로 하고 각각의 계 및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상사면	⋮ 오곡	⋮ 오곡 연동	⋮ 제2반 제1반 제2반	⋮ 현행과 같음 연동 오실
	마륵	마륵	제1반	현행과 같음
⋮ 계	⋮ 11	⋮ 25	⋮ 31	⋮
⋮ 서면	⋮ 선평	⋮ 선평3 건보1 건보2	⋮ 제2반 제1반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5반	⋮ 현행과 같음 건보 포레나순천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건보3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계	⋮ 14	⋮ 69	⋮ 119	⋮
⋮ 총계	⋮ 163	⋮ 476	⋮ 745	⋮

별표 2 중 삼산동 44통 다음에 45통, 46통, 47통, 48통, 49통 5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곡동 17통 다음에 18통, 1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u>45</u>	<u>1</u>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
		<u>2</u>	102동
		<u>3</u>	103동
	<u>46</u>	<u>1</u>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
		<u>2</u>	105동
		<u>3</u>	106동
		<u>4</u>	107동
	<u>47</u>	<u>1</u>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
		<u>2</u>	109동
		<u>3</u>	110동
	<u>48</u>	<u>1</u>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
		<u>2</u>	112동
		<u>3</u>	113동
		<u>4</u>	114동
<u>49</u>	<u>1</u>	가곡 대광로제비양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	
	<u>2</u>	102동	
	<u>3</u>	103동	
	<u>4</u>	104동	
	<u>5</u>	105동	
<u>50</u>	<u>1</u>	가곡 대광로제비양 아파트 106동	
	<u>2</u>	107동	
	<u>3</u>	108동	
	<u>4</u>	110동	
	<u>5</u>	111동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u>1</u>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
		<u>2</u>	102동
		<u>3</u>	103동, 상가동
		<u>4</u>	104동
	19	<u>5</u>	105동
		<u>1</u>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
		<u>2</u>	107동
		<u>3</u>	108동
		<u>4</u>	109동
		<u>5</u>	110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연동	제1반	연동			연동	제1반	연동
			<신설>	<신설>				제2반	오실
	마륵	마륵	제1반	현행과 같음		마륵	마륵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계	11	25	30		계	11	25	31	
⋮	⋮	⋮	⋮	⋮	⋮	⋮	⋮	⋮	⋮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건보	제1반	건보			건보1	제1반	건보
		<신설>	<신설>	<신설>			건보2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1동
		<신설>	<신설>	<신설>				제2반	102동
		<신설>	<신설>	<신설>				제3반	103동
		<신설>	<신설>	<신설>				제4반	104동
		<신설>	<신설>	<신설>				제5반	105동
		<신설>	<신설>	<신설>			건보3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6동
		<신설>	<신설>	<신설>				제2반	107동
		<신설>	<신설>	<신설>				제3반	108동
		<신설>	<신설>	<신설>				제4반	109동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계	14	67	100		계	14	69	119	
⋮	⋮	⋮	⋮	⋮	⋮	⋮	⋮	⋮	⋮
총계	163	474	735		총계	163	476	745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삼산동	44 <신설>	6 <신설>	현행과 같음 <신설>	삼산동	44 45	6 1 2 3	현행과 같음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신설>	<신설>	<신설>		46	1 2 3 4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신설>	<신설>	<신설>		47	1 2 3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 109동 110동
	<신설>	<신설>	<신설>		48	1 2 3 4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 112동 113동 114동
	<신설>	<신설>	<신설>		49	1 2 3 4 5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신설>	<신설>	<신설>		50	1 2 3 4 5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6동 107동 108동 110동 111동
조곡동	17 <신설>	4 <신설>	현행과 같음 <신설>	조곡동	17 18	4 1 2 3 4 5	현행과 같음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상가동 104동 105동
	<신설>	<신설>	<신설>		19	1 2 3 4 5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10개 리·통, 44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72	882	10	
반 장	2,406	2,450	4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세입(a)	-	-	-	-	-	-
세출(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시 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51,400천원/연간(이·통장 10명, 반장 44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10명=36,000,000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10명=6,000,000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10명=4,800,000원
 - 이·통장 통신비 : 20,000원×12월×10명=2,40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44명=2,2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과장 최영화(☎ 749-5453)
자치행정팀장 이재환(☎ 749-5625)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1조 목적)

-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안 3조 지원범위)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안 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안 7조 포상)

- 모범적으로 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2. 2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5.(가족복지과-51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7.(기획예산실-16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8.(순천시 공고 제2023-351호)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과장 김경만(☎ 749-5466)
 - 사회재난팀장 이수경(☎ 749-3046)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관련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7조의2(경비지원) ① (생략)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었으나,
-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음
- 이에 행정의 신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 시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순천시의회(임시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90천㎡
- 사업기간 : 2015 ~ 2024년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LH공사/직접 개발
- 유치업종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사업, 첨단제조업 등

나. 지원내용

- 준공 후 미 분양 산업용지 20% 지자체 매입
 - 추정금액 : 약 26억원 * 산업용지4,395평 × 592천원/평
- 기반시설 지원
 - 지구계 경계로 부터 공공 상·하수도 관로 연결 공사 지원
 - 추정금액 : 4억원(상수2.5, 하수1.5) * 상수관 50m, 하수관200m
 - * 최대 조성비의 2% 이내
- 부담금 지원
 -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추정금액 : 17.2억원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추정금액 : 33억원
- 지원시설 등 지자체 직접 건축 노력
 - 국비지원 R&D기반구축사업(2개) 유치에 노력한다
- 조성기간 중 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 마련 지원

다. 지원사유

- 국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무형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필요
- 우리 시 생태이미지에 걸맞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
-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적 단점을 부지 분양 단가 인하로 보완하여 조기분양 효과를 거양코자 함
- 국토부, 도시첨단사업단지 공모에 응모하면서 우리시 지원계획 제안을 통해 최종 선정
(평가기준에 지자체 지원 30점 배점)
- * 평가기준 : 단지 20만~30만㎡, 배점100점(수요확보50, 입지·가격요건20, 지자체 지원 30)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 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4. 주무부서(신성장산업과) 의견

○ 상호 신뢰를 통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내용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첨부서류

○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진현황 1부.

순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진 현황

「도시첨단산업단지」란 도심 또는 도시인근에 위치하여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가까운 직주 근접형으로 산업·주거·상업의 복합기능을 갖춘 신개념의 산업단지임.

- * 2014. 3. 12. 정부의 ‘제5차 무역투자진흥 회의’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14년 3개소와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며,
- *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생산녹지 등 개발제한 구역을 활용해 투자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치 :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일원(부지면적 191천㎡)
- 유치업종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 사업비 : 534억원(용지비 272억, 조성비 224억, 간접비 38억)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II 추진경위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 발표(제5차 투자활성화대책) : '14. 3. 12.
- 지자체 공모 제안서 제출(순천시 ⇒ 국토교통부) : '14. 9. 26.
-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순천,남양주,울산,대전,경산) : '15. 1. 18.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LH⇒국토교통부) : '17. 6. 14.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 '17. 12. 29.
- 보상 착수 : '18. 10. 26.
- 조성공사 착수 : '20. 12.
- 보상 완료(보상율 : 100%) : '21. 1.
- 사업준공 : '24. 12. 31.

III 기대 효과

-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기대
- 연구소 등 첨단산업 유치로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 가능
- R&D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도시의 경제 기반 마련
- 3천명의 고용창출, 5천억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 기대

IV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증감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90,050	190,171	100.0	100.0	증) 121	분할측량 결과 반영	
산업시설용지	70,038	57,934	36.9	30.5	감) 12,104		
복 합 용 지	18,280	21,400	9.6	11.4	증) 3,120		
주 거 용 지	소 계	30,786	29,468	16.2	15.5	감) 1,318	
	단독주택	4,037	2,427	2.1	1.3	감) 1,610	
	공동주택	18,749	19,041	9.9	10.0	증) 292	• 60㎡~85㎡, 363세대
	행복주택	8,000	8,000	4.2	4.2	-	• 60㎡이하, 300세대
상업시설용지	4,611	6,624	2.4	3.5	증) 2,013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4,824	7,213	2.5	3.7	증) 2,389	
	지원시설	4,824	6,313	2.5	3.3	증) 1,489	
	주유소	-	900	-	0.4	증) 90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61,511	67,532	32.4	35.4	증) 6,021	
	도로	37,658	42,099	19.8	22.1	증) 4,441	
	주차장	2,006	2,370	1.1	1.2	증) 364	
	공원	7,422	13,350	3.9	7.0	증) 5,928	• 저류시설 중복결정
	녹지	11,576	7,140	6.1	3.8	감) 4,436	
	공공공지	2,369	2,273	1.3	1.2	감) 96	
저류시설	480	300	0.2	0.1	감) 180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정의(안 제2조)
-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우수기업 인증(안 제10조, 안 제11조)
-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가족복지과-34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7.(기획예산실-11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31호)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 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참고**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코로나 이후 심신회복과 치유를 위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고조 등으로 발달한 웰니스 산업을 관광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여행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웰니스 관광 :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14조)
 -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삭제 → 지원 대상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 시장이 따로 정함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신설(안 제16조의2)
-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5)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31.(기획예산실-13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4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을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를 “지역명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행·재정적”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관광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 및 제16조” 를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로 한다.

제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웰니스 관광”</u>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p>
<p>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p> <p>① 시장은 <u>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3. <u>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u></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u></p>	<p>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p> <p>① ---- <u>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u> ----- ----- ----- <u>경우</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명소</u>----- ----- -----</p> <p>4. <u>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④ 그 밖에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7조(자료제공) 제14조 및 제1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p> <p>1. 2. (생략)</p> <p>제2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③ 제1항에 따른 ----- ----- -----.</p> <p>제16조의2(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관광콘텐츠) 개발</p> <p>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p> <p>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p> <p>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p> <p>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7조(자료제공)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조금)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p>

현 행

개 정 안

<삭 제>

[별표 1] <개정 2020.06.01., 2021.03.3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분야	구분	지급 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 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숙박	내·외국인	내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외국인 3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0명 이상		1박 6,000원		
			2박 이상 10,000원		
체험	농촌 체험	내국인 10명 이상	1인당 체험경비의 50% 범위내 최대 5,000원		
		외국인 3명 이상	※ 분야별 인센티브 중복 가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749-5500)
관광기획팀장 전선희(☎ 749-5788)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인가)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지원대상 범위 확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중등교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3.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5.(가족복지과-51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2. 7.(평생교육과-231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8.(기획예산실-18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38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안교육기관(협동조합더힘스쿨·사랑어린학교·어깨동무학교·하늘샘국제기독교학교·새로이미니스트), 특수학교(선혜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 순천교육지원청 「2022~2026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자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896	-242	-231	-214	-209
세입(a)	0	0	0	0	0
세출(b)	896	242	231	214	209

- 비용추계(당초-변경) 대조표 (단위 : 명, 백만원)

당초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784	880	2,380	238	2,267	227	20,96	210	2,041	205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변경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904	892	2,420	242	2,307	231	2,136	214	2,081	209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대안교육기관(1학년)	120	12	40	4	40	4	40	4	40	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 계	896	242	231	214	209
시 비	896	242	231	214	20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3년) 2,420명 × 100,000원 = 242,000천원
- (2024년) 2,307명 × 100,000원 = 230,700천원
- (2025년) 2,136명 × 100,000원 = 213,600천원
- (2026년) 2,081명 × 100,000원 = 208,1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신은숙(☎ 749-6753)
- 교육지원팀장 남현순(☎ 749-6761)

참고**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화장시설 이용료를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부담시킴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 제공

2.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특례」 사항 신설(안 제29조제2호)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외」 사항 개정(안 제29조제3호나목)
 - 현행 ‘관외’ 자격인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를 ‘특례’로 변경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개정(별표1)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5. ~ 2. 1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17.(가족복지과-207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3.(기획예산실-64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5.(순천시 공고 제2023-182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별표 1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관내란 다음에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례	ㄷ	405,000	
----	---	---------	--

별표 1의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관외의 사용료란 중 “405,000” 을 “700,000” 으로 하고, 같은 란 화장시설의 15세 미만의 관내란 다음에 특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례	ㄷ	202,000	
----	---	---------	--

별표 1의 화장시설의 15세 미만의 관외의 사용료란 및 같은 란의 개장유골의 관외의 사용료란 중 “202,000” 을 각각 “350,000”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관외</p> <p>가. (생 략)</p> <p>나. <u>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u></p> <p>다. ~ 바. (생 략)</p>	<p>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특례</u></p> <p>가. <u>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u></p> <p>나. <u>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u></p> <p>3.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별표 1] <개정 2017.07.31, 2020.06.01></p> <p style="text-align: center;">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별</th> <th>구 분</th> <th>단 위</th> <th>사 용 료 관 리 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원묘지</td> <td rowspan="2">묘지 6.61㎡</td> <td>관내</td> <td>기</td> <td>1,030,000</td> <td rowspan="2">*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td> </tr> <tr> <td>관외</td> <td>"</td> <td>1,600,000</td> </tr> <tr> <td rowspan="2">자연장지</td> <td rowspan="2">묘지 0.25㎡</td> <td>관내</td> <td>"</td> <td>40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td> <td>700,00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별</th> <th>구 분</th> <th>단 위</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화장시설</td> <td rowspan="3">15세 이상</td> <td>관 내</td> <td>구</td> <td>58,000</td> </tr> <tr> <td>특 례</td> <td>"</td> <td>405,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700,000</td> </tr> <tr> <td rowspan="3">15세 미만</td> <td>관 내</td> <td>"</td> <td>45,000</td> </tr> <tr> <td>특 례</td> <td>"</td> <td>202,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350,000</td> </tr> <tr> <td rowspan="2">개장유골</td> <td>관 내</td> <td>"</td> <td>32,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202,000</td> </tr> <tr> <td rowspan="2">죽은 태아</td> <td>관 내</td> <td>"</td> <td>26,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135,000</td> </tr> <tr> <td rowspan="2">유택동산</td> <td>관 내</td> <td>"</td> <td>10,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10,000</td> </tr> <tr> <td rowspan="2">봉 안 당</td> <td rowspan="2">봉안</td> <td>관 내</td> <td>기</td> <td>180,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600,000</td> </tr> </tbody> </table>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 내	구	58,000	특 례	"	405,000	관 외	"	700,000	15세 미만	관 내	"	45,000	특 례	"	202,000	관 외	"	350,000	개장유골	관 내	"	32,000	관 외	"	202,000	죽은 태아	관 내	"	26,000	관 외	"	135,000	유택동산	관 내	"	10,000	관 외	"	10,000	봉 안 당	봉안	관 내	기	180,000	관 외	"	600,000	<p>[별표 1] <개정 2017.07.31, 2020.06.01></p> <p style="text-align: center;">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별</th> <th>구 분</th> <th>단 위</th> <th>사 용 료 관 리 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원묘지</td> <td rowspan="2">묘지 6.61㎡</td> <td>관내</td> <td>기</td> <td>1,030,000</td> <td rowspan="2">*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td> </tr> <tr> <td>관외</td> <td>"</td> <td>1,600,000</td> </tr> <tr> <td rowspan="2">자연장지</td> <td rowspan="2">묘지 0.25㎡</td> <td>관내</td> <td>"</td> <td>40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td> <td>700,00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별</th> <th>구 분</th> <th>단 위</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화장시설</td> <td rowspan="3">15세 이상</td> <td>관 내</td> <td>구</td> <td>58,000</td> </tr> <tr> <td>특 례</td> <td>"</td> <td>405,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700,000</td> </tr> <tr> <td rowspan="3">15세 미만</td> <td>관 내</td> <td>"</td> <td>45,000</td> </tr> <tr> <td>특 례</td> <td>"</td> <td>202,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350,000</td> </tr> <tr> <td rowspan="2">개장유골</td> <td>관 내</td> <td>"</td> <td>32,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350,000</td> </tr> <tr> <td rowspan="2">죽은 태아</td> <td>관 내</td> <td>"</td> <td>26,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135,000</td> </tr> <tr> <td rowspan="2">유택동산</td> <td>관 내</td> <td>"</td> <td>10,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10,000</td> </tr> <tr> <td rowspan="2">봉 안 당</td> <td rowspan="2">봉안</td> <td>관 내</td> <td>기</td> <td>180,000</td> </tr> <tr> <td>관 외</td> <td>"</td> <td>600,000</td> </tr> </tbody> </table>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 내	구	58,000	특 례	"	405,000	관 외	"	700,000	15세 미만	관 내	"	45,000	특 례	"	202,000	관 외	"	350,000	개장유골	관 내	"	32,000	관 외	"	350,000	죽은 태아	관 내	"	26,000	관 외	"	135,000	유택동산	관 내	"	10,000	관 외	"	10,000	봉 안 당	봉안	관 내	기	180,000	관 외	"	6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 내	구	58,000																																																																																																																																																											
		특 례	"	405,000																																																																																																																																																											
		관 외	"	700,000																																																																																																																																																											
	15세 미만	관 내	"	45,000																																																																																																																																																											
		특 례	"	202,000																																																																																																																																																											
		관 외	"	350,000																																																																																																																																																											
	개장유골	관 내	"	32,000																																																																																																																																																											
		관 외	"	202,000																																																																																																																																																											
	죽은 태아	관 내	"	26,000																																																																																																																																																											
		관 외	"	135,000																																																																																																																																																											
	유택동산	관 내	"	10,000																																																																																																																																																											
		관 외	"	10,000																																																																																																																																																											
봉 안 당	봉안	관 내	기	180,000																																																																																																																																																											
		관 외	"	6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 내	구	58,000																																																																																																																																																											
		특 례	"	405,000																																																																																																																																																											
		관 외	"	700,000																																																																																																																																																											
	15세 미만	관 내	"	45,000																																																																																																																																																											
		특 례	"	202,000																																																																																																																																																											
		관 외	"	350,000																																																																																																																																																											
	개장유골	관 내	"	32,000																																																																																																																																																											
		관 외	"	350,000																																																																																																																																																											
	죽은 태아	관 내	"	26,000																																																																																																																																																											
		관 외	"	135,000																																																																																																																																																											
	유택동산	관 내	"	10,000																																																																																																																																																											
		관 외	"	10,000																																																																																																																																																											
봉 안 당	봉안	관 내	기	180,000																																																																																																																																																											
		관 외	"	600,000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 사용료 및 시설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4,406,629	759,214	1,013,639	947,997	879,074	806,705
세입(a)	11,315,400	2,009,528	2,326,468	2,326,468	2,326,468	2,326,468
세출(b)	6,908,771	1,250,314	1,312,829	1,378,471	1,447,394	1,519,763

3-1. 세입 비용추계(제19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계	11,315,400	2,009,528	2,326,468	2,326,468	2,326,468	2,326,468
공원묘지	629,950	125,990	125,990	125,990	125,990	125,990
자연장지	479,500	95,900	95,900	95,900	95,900	95,900
화장시설	8,526,250	1,451,698	1,768,638	1,768,638	1,768,638	1,768,638
봉안당	1,679,700	335,940	335,940	335,940	335,940	335,9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6,908,771	1,250,314	1,312,829	1,378,471	1,447,394	1,519,763
국 비	966,987	175,000	183,750	192,938	202,585	212,714
도 비	414,423	75,000	78,750	82,688	86,822	91,163
시 비	5,527,361	1,000,314	1,050,329	1,102,845	1,157,987	1,215,88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
- 사업기간 : 년중
- 산 출 액(2023년) : 세출 1,250,314천원 / 세입 2,009,528천원
- 산출근거(2023년)

★세출	화장로 필터교체사업	500,000천원
	인 건 비	39,812천원
	일반운영비	500,812천원
	공원묘지 잔디구입비 등	9,690천원
	시설유지비	200,000천원
★세입	공원묘지 사용료(관내)	1,030,000원×44건 = 45,32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관외)	1,600,000원× 6건 = 9,60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수급자, 유공자)	515,000원×4건 = 2,06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연장)	515,000원×134건 = 69,010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내)	400,000원×161건 = 64,400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외)	700,000원×45건 = 31,50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내)	58,000원×1,760기 = 102,08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외)	700,000원×2,016기 = 1,411,200천원
	※ 23년 세입 405,000원×1,200기+700,000원×1,008기 = 1,191,600천원 (23년 7월 시행)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특례)	405,000원×384기 = 155, 520천원
	※ 23년 세입 405,000원×0기+405,000원×192기 = 77,760천원 (23년 7월 시행)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관내)	45,000원×18기 = 81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관외)	350,000원×2기 = 70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특례)	202,000원×1기 = 202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개장유골)	32,000원×518기 = 16,576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외 개장유골)	350,000원×233기 = 81,550천원
	※ 23년 세입 202,000원×116기+350,000원×115기 = 63,682천원 (23년 7월 시행)	
	봉안당 사용료(관내)	180,000원×1,044기 = 187,920천원
	봉안당 사용료(관외)	600,000원×144기 = 86,400천원
	봉안당 연장(관내)	180,000원×199기 = 35,820천원
	봉안당 연장(관외)	600,000원×43기 = 25,8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양영심(☎ 749-6180)

장묘문화팀장 김범수(☎ 749-863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제정이유

-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5조) 시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사업
- (안 제7조~제11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등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2023. 3. 1.) 결과 : 의견 있음
 - (의견제출자) 순천시 약사회
 - (제출의견) 제5조(사업수행기관 지원)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만 지원하도록 규정,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인 의료기관이 야간 운영할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 연장운영이 수반되므로 사업 지원 대상에 약국 포함 요청
 - (소관부서 검토결과)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5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52)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순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약국,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검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련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医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정의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6.(가족복지과-29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09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활용선별시설</u>” 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생 략)</p> <p>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u>재활용 시설</u></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재활용 선별시설</u></p>

참고**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제1항)
 - (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제10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11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제12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1.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p> <p>3. ~ 9. (생 략)</p> <p>10.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u> ----- ----- ----- ----- -----</p> <p>3. ~ 9. (현행과 같음)</p> <p>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u>가정용 3세제 공급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공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u></p>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월3㎥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세출(b)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특별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출기초
총 계	2,999			82,412,520	
장애인	210	가정용	2,290	5,770,800	2,290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2,290	76,641,720	2,290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8제1항)
 - (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8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4호” 를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까지” 를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로 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p> <p>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8조(감면 등)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p> <p>②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 -----.</p> <p>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p>

[별표 7] <개정 2020.11.18.>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별표 7] <개정 2020.11.18.>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28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하수도요금 월3^m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세출(b)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특별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 출 기 초
총 계	2,999			68,557,140	
장애인	210	가정용	1,905	4,800,600	1,905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1,905	63,756,540	1,905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